

2005. 4. 27

제118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회의

조 레 안 검 토 보 고

- ①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
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- ②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□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4. 2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4. 25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14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개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반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, 과태료를 50% 감액부과 받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전액 납부토록 하는 재처분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4항)
-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토록 함(안 제6조 제2항)
- 신고포상금 지급을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연 50만 원, 월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향 조정(안 제12조 제1항 제1호)

-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하향 조정함(안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1)
-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(안 제12조 제1항 제5호)

3. 검토의견

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50% 이상 경감되고, 소규모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한도액이 50만 원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,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토록 해 직업적인 신고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,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약속하여 과태료의 50%를 감액 부과하였으나 이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검토됨.
-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참고자료

- 「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
-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
-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

②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4. 2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4. 25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15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변경과 , 직업적인 신고꾼들의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제외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토록 함(안 제26조의2 제2항)
- 담배꽂초, 휴지 등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26조의2 제4항)
-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. (안 제24조 별표7)

3. 검토의견

-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이 가능토록 하고,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직업적인 신고자(쓰파라치)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참고자료

- 폐기물관리법. 같은법시행령. 같은법시행규칙.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규정(환경부예규 제 257호)